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2020년으로 설정된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 삭제 등〉
■ 유용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0485호)

2025. 9.

국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송수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유용원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5. 12.
3. 회부연월일 : 2025. 5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·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. 또한,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,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,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,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,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.

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,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,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, 제17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).

Ⅲ. 검토의견

1) 목표연도 및 수치기준 삭제

- 개정안은 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, 상비병력 및 간부비율 조정, 예비전력 운영체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기존 법률상 명시된 2020년까지의 목표연도 및 수치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16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6조(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)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,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.	제16조(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.	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 - ----- -----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-----.

현행	개정안
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,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,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. ③ ~ ⑤ (생략) 제26조(적정 간부비율의 유지) ① 국군의 장교·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제27조(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) ① (생략) 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·조정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② 제1항의 적정-----정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적정 간부비율의 유지) ① ----- -----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----- ---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7조(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상비병력규모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□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「국방개혁 기본계획 '06-'20」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2020년까지 달성할 세부 목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음.

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,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(2014~2030),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.0,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.0 등 여러 차례 국방개혁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, 기존 법률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정책 변화가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임.

□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률상 명시된 2020년까지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, 실제로 현재까지 법률에 명시된 목표는 모두 사실상 달성된 상태로 다음과 같음.

① 여군 인력 비율: 법 제16조는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%, 부사관 정원의 5%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기 달성된 상태임.

[국군 장교·부사관 중 여군 비율 현황]

(단위 : 명)

구 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계	13,900 (7.5%)	15,700 (8.2%)	17,300 (9.0%)	18,500 (10.0%)	18,900 (10.9%)
장교	5,700 (9.0%)	6,200 (9.7%)	6,700 (10.6%)	7,200 (11.5%)	7,400 (12.4%)
부사관	8,200 (6.8%)	9,500 (7.5%)	10,600 (8.6%)	11,300 (9.1%)	11,500 (10.1%)

* 백의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 수치임

* 자료: 국방부

② 상비병력 규모: 법 제25조는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2025년 기준 국군 상비병력은 50만명 미만¹⁾으로서 목표를 달성한 상태임.

[2025년 기준 국군 상비병력 정원 현황]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육군	해군	공군	해병대
군인	500,000	365,200	41,000	65,000	28,800

* 현원은 2025년 기준 정원에 미치지 못하나,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 대상 자료임.

* 자료: 국방부

③ 간부 비율: 법 제26조는 각 군별 간부 비율을 상비병력의 40%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2023년부터 이미 간부 비율은 40% 수준을 달성한 상태임.

[국군 간부비율 현황]

(단위 : 명)

구 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간 부	204,000	206,000	204,000	205,000	205,000
병	374,000	348,000	325,000	295,000	295,000
간부비율	35.3%	37.2%	38.6%	41.0%	41.0%

* 수치는 정원 기준이며, 현원은 비공개 대상 자료임.

* 백의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 수치임

* 자료: 국방부

1) 국군 상비병력 현원은 정원인 5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,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 대상 자료임.

④ 예비전력 규모: 법 제27조 및 시행령에서는 예비전력 규모의 상비
병력 연동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, 최근 5년간 예비군훈련
대상 및 응소 인원은 아래와 같음.

[2020~2024년 예비군훈련 대상인원 및 응소인원]

(단위 : 명)

구 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대상인원	코로나로 훈련 미 실시		1,719,667	2,773,955	2,910,159
응소인원			1,582,069	2,663,794	2,751,178

* 2023년 코로나로 인해 2022년도에 축소시행 했던 예비군훈련을 정상 시행하였고, 훈련에 대한
관심도 증가로 예년에 비해 예비군 5 ~ 6년차가 시행하는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의 참석률이
증가하였음.

- ☐ 이상과 같이 「국방개혁법」상 목표연도는 이미 경과하였고, 법률에
명시된 수치목표 역시 대부분 달성된 바, 해당 조항에서 연도 및 수치
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
적절한 조치로서,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- ☐ 국방부는 현행법상 이미 목표연도가 경과되었고, 수치목표 역시 달성
된 바 특정 목표연도와 세부 수치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
하는 입장임.

2)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규정 정비

- 개정안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근거를 삭제하고,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7조(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) ① 국방부장관은 <u>국방업무의</u>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<u>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·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거나,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	제17조(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) ① ----- <u>국군이 수행하는</u> <u>업무 중</u> ----- -- <u>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</u>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·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/u>	② ----- <u>군 책임운영기관</u> ----- ----- -----.

- 현행 「국방개혁법」 제17조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하여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2008년 제정된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」²⁾(이하 “「군책임

운영기관법」"이라 함)은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.

-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조직 내·외부에서 공개채용된 기관장에게 조직·인사·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국방운영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,

정부의 책임운영기관이 「정부조직법」 및 그 하위 규정상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, 군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적·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 기준의 개발과 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
-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한 미국, 영국, 캐나다, 뉴질랜드 등의 국가 중 영국은 22개의 군 책임운영기관³⁾을 운영하고 있으며 ‘국방항공정비청’(Defense Aviation Repair Agency, DARA), ‘국방보급창’(Defense Storage & Distribution Agency, DSDA)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.

2)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·인사·예산·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군 책임운영기관”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.

3) 육군기지보수국, 국방인사국, 영국군우체국, 국방분석국, 국방항공정비소, 국방회계청, 국방통신서비스국, 국방관재국, 국방의료교육훈련국, 국방조달국,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등 총 22개 기관임. 한국국방연구원, 주간국방논단 “영국의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과 시사점”(1159호), 2007.7.9. 참조

우리나라 경우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는 국방출판지원단, 국방통합데이터센터, 국군복지단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종합보급창, 육군종합정비창, 해군보급창, 해군1수리창, 해군2수리창, 해군3수리창, 해군정비창, 공군종합보급창, 공군81정비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,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, 전라제주시설단이 지정되어 있음.

□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전투군무지원 분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「국방개혁법」 제정⁴⁾ 이후 별도로 제정된 「군책임운영기관법」과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그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□ 국방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동일하게 규정하고, 용어도 ‘군 책임운영기관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.

4)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)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군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·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거나,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군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·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3) 부칙에 대한 검토

- ☐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상비군 규모의 적정 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⁵⁾.
- ☐ 한편, 가장 최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은 2023년 수립된 「국방혁신 4.0 기본계획」이며, 법 제25조⁶⁾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의 목표수준은 2026년 수립 예정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.
- ☐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입장으로, 기한 내에 상비군 규모의 적정 수준을 포함한 계획 수립에는 별다른 실무적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310

5) 개정안 부칙 제2조(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) 국방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상비군 규모의 적정 수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최초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6) 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.

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,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,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.